

#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132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를 통한 공공서비스 참여확대와 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2006년부터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출자·출연 개요

- 대상기관 : (사)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
- 관련법령
  - (공동)법령 : 민법(제32조),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  - (개별)법령 : 자원봉사활동 기본법
  - 조 레 :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

### 나. 주요 사업

- 자치구센터·풀뿌리단체 등 지역단위 자원봉사 역량 제고

- 자치구센터 지원 : 지역단위 소모임 육성·연계 강화, 시·구 공동캠페인 확대 등
- 지역활동 역량강화 : 동 자원봉사거점 시범운영 지원, 자원봉사상담가 및 이파트봉사단 재교육
- 자원봉사관리자 및 시민리더 역량강화 : 수요맞춤형 교육, 공모사업, 관리자교육, 풀뿌리 및 시민리더 성장학교
- 소통·공유·협력을 통한 자원봉사 플랫폼 운영 활성화
  - 온라인 플랫폼 : 일상 속 작은 실천과 변화를 이끄는 자원봉사활동 콘텐츠 개발 및 연계
  - 민간자원연계 : 공공기관·기업·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한 물적자원 및 활동지원
  - 국내·외 자원봉사 이슈개발 및 지역밀착형 재난안전 활동

#### 다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
- 자원봉사의 체계적 발전과 민간 주도 자원봉사활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설립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,
- 자원봉사활동의 민·관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범시민운동으로 승화·확산하기 위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 :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자치행정과 주민지원팀 김현정 (☎2133-5830)